

##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 변경 공고

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30일  
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 변경 내용

#### 가. 교육행정직렬 구분모집 폐지, 통합선발

- (변경안) 2022년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부터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

현행	변경안(2022년부터 시행)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분모집 <input type="radio"/> (교육행정직렬)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구분하여 선발	<input type="checkbox"/> 통합선발 <input type="radio"/> (교육행정직렬)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구분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지역으로 통합선발

(예시: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의 경우, 2021년까지는 '교육행정(경기남부)'로 응시 가능하였으나, 2022년부터는 '교육행정'으로 응시)

#### 나. 전 직렬 거주지 요건 완화

- (변경안) 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- ① 시험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- ② 시험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
현행	변경안(2022년부터 시행)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지 제한</p> <p>○ 시험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지 제한(완화)</p> <p>○ 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</p> <p>① 시험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</p> <p>② 시험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</p>

- 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'개인별주민등록표'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.  
[예시: 과거 경기도 강화군(현재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강화군) 거주자 → 응시불가]
- ※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.(계산 방법은 「민법」제160조에 따름)
-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도 위 요건과 같으며,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- ※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(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) 졸업(예정)자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.

## 2 기타사항

- 가. 위 변경사항은 2022년 시행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됩니다.
- 나. 문의처: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(☎031-820-0574, 0576)